

예탁증권담보용자약관

개정 2018. 10. 08

시행 2018. 10. 08

제 1 조(약관의 목적)

예탁증권담보용자거래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예탁증권담보용자거래를 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 2 조(관계법령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3 조(예탁증권담보용자 서비스 구분)

예탁증권담보용자란 고객의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용자를 말하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담보용자」란 회사에 거래계좌를 가진 고객에게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금형 일반담보용자」란 일반담보용자로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가진 고객에게 연금저축계좌 내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매도증권담보용자」란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약정신청 및 해지)

① 고객은 「일반담보용자」, 「매도증권담보용자」(이하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이라 한다)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고객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에 의하여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거래서비스 약정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를 통하여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은 약정의 해지 전까지는 유효하며, 예탁증권담보용자금의 상환 후에도 계속하여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에 따른 예탁증권담보용자를 받을 수 있다.

③ 고객은 예탁증권담보용자에 대한 한도의 증액 등 중요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 해지는 신청서에 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고객의 계약해지 의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 신청 시 인지세법상에 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인지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⑥ 고객은 일반담보용자약정 신청 시 출금가능금액(CMA RP 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 는 <별지>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한 출금요청에 대해 보유 예탁증권을 담보로 자동으로 금전의 융자를 하는 '소액자동담보용자' 신청이 가능하며, <별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⑦ 고객은 매도증권담보용자 및 일반담보용자약정 신청 시 수도결제를 통해 현금미수금 발생시 보유 예탁증권을 담보로 자동으로 금전의 융자를 하는 '자동미수상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별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⑧ 고객은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 신청 시 '해외주식담보용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별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⑨ 고객은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 신청 시 'S-Loan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별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제 5 조(예탁증권담보용자 신청방법)

① 고객이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을 체결한 후 예탁증권담보용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녹취 가능한 전화 및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실행 시 융자금은 해당 고객의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을 체결할 때 '소액자동담보용자' 신청을 한 고객의 경우 신청서, 전자문서 작성 없이 단순 출금 요청 만으로도 융자가 신청될 수 있다.

③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을 체결할 때 '자동미수상환 서비스' 신청을 한 고객의 경우 해당 계좌의 수도 결제로 현금미수가 발생하면 발생일 19:00 경 신청서, 전자문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매도증권담보용자 및 일반담보용자가 신청될 수 있다.

제 6 조(예탁증권담보용자 한도)

고객은 <별지>에서 정한 「예탁증권담보용자」 최고한도 내에서 구분별 담보용자한도 및 서비스별 담보용자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 6 조의 2(예탁증권담보대상 증권)

예탁증권담보대상 증권은 <별지>에서 정한 증권으로 한다.

제 7 조(예탁증권담보용자기간 및 연장)

- ① 예탁증권담보용자기간은 일반담보용자의 경우 <별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매도증권담보용자의 경우 용자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증권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 ② 고객은 일반담보용자의 경우 영업점을 통해 용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심사 후 용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 8 조(예탁증권담보용자금 등)

- ① 회사가 「일반담보용자」, 「매도증권담보용자」를 할 때에는 <별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용자를 한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용자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담보용자금을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 시 고객이 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단 연금형 일반담보용자를 하는 경우 예탁증권담보용자금은 용자 신청시 고객이 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 9 조(용자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 ① 고객은 <별지>에서 정하는 용자이자율에 따라 매월 분의 용자이자를 <별지>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용자이자를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증권담보용자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③ 융자일수는 융자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융자이자 및 연체이자는 일할 계산한다.

제 10 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① 회사는 예탁증권담보유자에 대하여 <별지>에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는다.

② 고객은 예탁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해당 예탁증권담보유자금에 대하여 <별지>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지>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또는 외화자산의 환율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CMA RP 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는 <별지>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④ 회사가 제 2 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예탁증권을 고객의 예탁증권담보유자거래를 위하여 예탁증권담보유자금 및 예탁증권담보유자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국증권금융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타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⑥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 2 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 2 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⑧ 제 1 항의 담보는 담보물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같다)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하며, 담보권은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배당주, 무상주, 그 밖의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매도증권담보유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 매도증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제 11 조(임의상환정리)

- ① 회사는 예탁증권담보융자금의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 12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담보가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 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 1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 10 조제 2 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 12 조(임의상환방법)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계좌에 예탁된 현금(외화예수금 포함)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CMA 평가금액이 있는 계좌는 CMA RP 환매도 선행)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별지>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예탁증권담보융자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 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회사는 제 10 조제 2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요구
 4.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 요구
 5.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은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 및 환전 순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⑥ 고객은 제 5 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3 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관련비용, 연체이자, 융자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사용한다.

제 13 조(예탁증권담보용자의 상환)

- ①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예탁증권담보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상환할 수 있다.
- ② 매도증권담보용자의 융자금 및 융자이자에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환매)결제일의 매도(환매)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된다.
- ③ '소액자동담보용자' 로 융자받은 융자금 및 융자이자에 고객의 신청 없이 매 영업일 22:00 경 현금상환 가능금액 내에서 융자일 빠른 순으로 자동으로 상환 된다.

제 14 조(기한의 이익 상실)

-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해당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날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 1 항 제 1 호 및 제 5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 1 항 제 5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용자이자, 채무원금을 갚는데 사용한다.

제 15 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예탁증권담보용자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예탁증권담보용자금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예탁증권담보용자금 상환을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채무원금 등의 상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주문의 수탁은 제외)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상환을 위한 매매주문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 분에 대한 인출은 제외)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제16조(예탁증권담보용자의 제한 및 중단)

- ①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 대상고객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을 체결한 고객 또는 담보용자를 신청한 고객이 별지에서 정한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새로운 담보용자 및 추가 담보용자를 금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관련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담보대출 총 한도 초과 등 그 밖의 회사가 담보용자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용자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위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경우 담보용자를 재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예탁증권담보용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고객제공정보의 변경사항 통지의무)

- ①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1 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약관의 시행일과 동시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 및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약관은 폐지되고, 종전약관에 의해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약관은 2005 년 3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5 년 10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5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9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1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1 년 4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1 년 11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2 년 1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2 년 1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3 년 9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3 년 12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4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4 년 8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5 년 10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6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6 년 5 월 13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6 년 8 월 1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7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7 년 8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7 년 11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8 년 02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8 년 0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8 년 10 월 08 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1. 제 4 조제 6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CMA 계좌의 RP 평가금액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 매매가 가능한 CMA 계좌에서 자동 매입하는 RP 에 대한 당일
세후평가금액

2. 제 4 조제 6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소액자동담보용자** 는 다음과 같다.

가. **소액자동담보용자** 신청 가능 계좌

위탁계좌,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 매매가 가능한 CMA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나. **소액자동담보용자** 범위

1) 출금, 이체출금, 자동이체, 지로/CMS, 예약이체출금 등의 경우 적용된다.

2) HTS, WTS, MTS 등 고객용 매체의 출금신청 화면에서는 **소액자동담보용자** 가능금액을
포함/미포함 한 출금가능금액 모두 확인이 가능하나 타업권, 타사의 ATM 기에서는
소액자동담보용자 가능금액을 포함한 출금가능금액만 조회 가능하다.

다. **소액자동담보용자** 관리

일반담보용자로서 관리되며 용자기간, 이자율, 이자징수방법, 만기관리 등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정한도 제외)

3. 제 4 조제 7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자동미수상환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미수상환서비스 신청 가능 계좌

위탁계좌, 상장 유가증권 매수 가능한 CMA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나. 자동미수상환서비스 대상 금액

당일 수도결제로 발생한 현금미수금의 전액 변제가 가능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용자한다. 만약
계좌의 용자가능한도금액이 전액 변제 가능금액 미만이면 용자가능한도금액 내에서 용자하여
미수금을 일부 변제한다.

다. 자동미수상환서비스 관리

1) 담보용자실행은 매도증권담보용자, 일반담보용자 순서로 한다.

약정 구분		용자실행
매도증권담보용자	일반담보용자	

약정	미약정	매도담보유자만 실행
미약정	약정	일반담보유자만 실행
약정	약정	매도담보유자 실행 후 예탁증권담보유자 실행

2) 매도증권담보유자 및 일반담보유자 실행 시 각각의 담보유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제6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유자 약정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예탁증권담보유자거래설명서 > 예탁증권담보유자의 한도 > 신용공여유형별 예탁증권담보유자 약정한도에 게시

나.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예탁증권담보유자/매도증권담보유자에 게시

5. 제 16 조제 1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유자신청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가. 융자신청금액이 1 만원이상 1 만원 단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나. 예탁증권담보유자약정이 체결되어 있어도 융자신청시점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거래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자, 그 밖에 회사와 거래 중 부실거래자로 등록된 자, 압류계좌, 담보유지비율미달계좌, 미수증권 발생계좌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보유자신청수량이 이미 질권 설정, 선물대용증권지정, 보호예수지정, 위탁계좌의 증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융자신청이 불가능하다.

다.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의 융자 약정 및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S-Loan 은 회사가 확인한 개인신용등급이 7~10 등급인 경우 융자 약정 및 신청이 제한됨)

라. 연금형 일반담보유자의 경우 연금지급개시가 된 계좌는 신청이 불가하다.

마. 연금형 일반담보유자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이 융자 신청 만기일로부터 1 달 이내 인 경우, 융자 신청이 불가하다.

바. 해외주식담보유자의 경우 E-mail 정보 미등록 계좌는 신청이 불가하다.

6. 제 6 조 2 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유자 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담보유자

1) 국내 주식: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중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종목

(HTS 담보용자가능종목 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용자가능 대상종목에서 제외

가) 한국거래소 조치 및 지정 종목

-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종목
-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종목
-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한 종목

나) 신규상장(등록)후 1 개월이 미경과한 종목 및 당사가 기업공개한 경우 3 개월 미경과한 종목(단, 기업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고객은 회사와 협의하여 신규상장종목 제한조건 예외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

다) 그밖에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 거래(시세조종, 공금횡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담보용자 불가능으로 선정한 종목

2) 해외 주식 : 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으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종목

(HTS 담보용자가능종목 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용자가능 대상종목에서 제외

가)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예고한 종목

나) 그밖에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 거래(시세조종, 공금횡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담보용자 불가능으로 선정한 종목

3) 채권

- 국채, 지방채 및 복수민간평가사의 평가등급에서 AA+등급이상 채권 중 당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종목

4)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가) ELB/DLB (파생결합사채) : 당사가 발행한 ELB/DLB

나) ELS/DLS(파생결합증권)

: 당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 중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ELS 및 DLS

(단, 신용연계 DLS 는 불가, ELS/DLS 는 자동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최종조기상환 평가일 이후부터는 담보용자 불가)

5) 집합투자증권

-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혼합형 집합투자증권, MMF

(단, 단위형, 폐쇄형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

6) 기타

- 상기 외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증권

나. S-Loan: 주식 중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종목

다. 매도증권담보유자: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 해외주식담보유자 약정 신청 시 해외주식 포함(거래국가별 매도(환매)대금 결제일 상이)

7. 제7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유자기간 및 연장은 다음과 같다.

가. 용자기간은 결제일로부터 90 일 (단, 연금형은 365 일)

나. 만기연장 가능 조건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90 일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

(단, 연금형은 1 년 단위 연장 가능)

다. 예탁증권담보유자거래설명서 > 예탁증권담보유자의 용자기간 > 일반담보유자의 용자기간 / 매도증권담보유자의 용자기간에 게시

라. 만기연장 가능 조건 등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예탁증권담보유자 / 매도증권담보유자에 게시

8. 제8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담보 대상별 일반담보유자비율(S-Loan은 주식만 해당)는 다음과 같다.

가. 담보대상별 일반담보유자비율

담보대상	용자한도
주식	용자신청일 기준가격의 50%~70%
채권	용자신청일 전일 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70%
파생결합증권/사채	전일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60%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60%~70%

나. 예탁증권담보유자거래설명서 > 예탁증권담보유자의 한도 > 용자가능금액 > 일반담보유자에 게시

다.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예탁증권담보유자에 게시

9. 제8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매도증권담보용자 한도는 다음과 같다.

- 가. **예탁증권담보용자거래설명서** > **예탁증권담보용자의 한도** > **용자가능금액** > **매도증권담보용자에 게시**
- 나.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매도증권담보용자에 게시

10. 제9조제1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용자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가. 기본이자율 (영업점계좌는 고객서비스 등급별 단일법 적용, 영업점 외계좌는 일괄 단일법 적용)

구분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영업점 계좌	연 6.0%	연 6.3%	연 6.6%	연 6.9%	연 7.2%
영업점 외 계좌	연 9.0%				

* 영업점 외 계좌는 다이렉트(은행)계좌임

- 나. 만기연장 시 이자율: 만기일 익일의 고객서비스등급 기간별 이자율과 협의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로 적용된다.
- 다. 이자율 산정방법: 이자율은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가격정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1. 제9조제1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융자이자징수일은 다음과 같다.

다음월 첫영업일, 매도상환시, 현금상환시

12. 제 9 조제 2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가. 예탁증권담보용자 상품별 최대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담보용자, 해외담보용자, **소액자동담보용자**, S-Loan 융자는 연 9.9%로 적용
 - 2) 연계 CMA 약정된 연금형 담보용자는 연 6.2%적용하며, 연계 CMA 미약정된 연금형 담보용자는 연 9.9%로 적용
- 나. 기본 연체이자율은 실제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등급과 관계없이 연체발생 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의 고객등급별 예탁증권담보용자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 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이내로 적용

다. 협의 고정이자율 적용 계좌는 협의 고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 3.0%)를 합산한 이자율과 최대연체가산율 중 낮은 이자율로 적용

라. 협의 할인이자율 적용 계좌는 최대연체가산율에서 차주에게 적용 중인 협의 할인이자율을 차감하여 적용

※ 윤년의 경우는 해당일수 반영하여 적용

13.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신용융자+예탁증권담보융자)유형별 최소담보유지비율은 140%이며, 해외주식담보융자 잔고 보유 여부에 따라 최소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주식담보융자 잔고 미 보유 시

: 신용공여 유형에 관계없이 신용공여금액(예탁증권담보융자, 신용융자, 대주 등)의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 5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160%로 적용(적용기준은 16:00 경 기준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됨, 단, 연금형 담보융자는 제외됨)

나. 해외주식담보융자 잔고 보유 시

: 신용공여 금액별 차등 담보유지비율에 30% 상향하여 적용됨
신용공여금액(국내/해외 합산) 30억원 이하인 경우 170%,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180%, 50억원 초과하는 경우 190%로 적용(적용기준은 1 회차 16:00 경, 2 회차 22:00 경 기준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됨)

14. 제 10 조제 2 항, 제 12 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제공기간 및 임의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공여유형별 추가담보제공기간: 요구일 포함 2일(D+1 일 까지)

* D : 요구일(추가담보제공 요구일), 16:00 경 기산

해외주식 담보융자 약정 신청 계좌의 경우 22:00 경 추가 기산

나. 미상환 융자금 발생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수량 산출(종목별 산출)

○ 반대매매수량 = 미상환 융자금(결제일까지의 이자포함) / 수량산정기준가격

* 수량산정기준가격은 (전일종가 × 종목군별할인율 × 0.992) 로 정의함

* 종목군별할인율은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군별 A/B/C 군은 전일종가의 -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중국주식은 전일종가의 -10%, 일본/홍콩/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기타국가 주식은 전일종가의 -15%로 할인하여 산정

〈투자사례〉

▶ 투자원금 400만원, 담보용자금 600만원, 10,000원인 주식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 규모 증가)

(1)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12,000 원	12,000,000 원	200%	
D+1 일	- 국내주식 A/B/C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12,0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10,20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용자금인 600 만원(6,000,000/10,200=589)을 상환하기 위해 589 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국내주식 D/E/F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12,000 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9,60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용자금인 600 만원(6,000,000/9,600=625)을 상환하기 위해 625 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2)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5,000 원	5,000,000 원	83%	

D+1 일	- 국내주식 A/B/C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5,0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4,25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4,250=1,412)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75 만원을 추가 납부 - 국내주식 D/E/F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5,000 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4,00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4,000=1,500)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00 만원을 추가 납부
-------	--

다. 담보유지비율 미달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수량 산출(종목별 산출)

고객이 납입기한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했더라도 반대매매일까지 계속 적용비율에 미달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단, 현금이 있는 계좌의 경우 금액기준 현금상환(외화예수금 포함)을 먼저 처리하고(CMA 평가금액이 있는 계좌는 CMA RP 환매도 선행),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수량을 산출한다. (가결제증권의 반대매매도 가능)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게 임의상환수량을 산정합니다. (해당 종목군은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1) 현금상환대상금액 산출

- 현금상환대상원금 = 최종부족금액/[(담보유지비율(예:1.4) - 1) - (담보유지비율(예: 1.4) × (경과일수/365) × 이자율)]
- 현금상환원금의 경과이자 = 현금상환대상원금 × (경과일수/365) × 이자율

* 담보미달종목의 현금상환수량 산출방법 : 종목별 산출

* 윤년의 경우 해당일 수 반영

2) 금액기준 매도상환방식에 의한 반대매매수량 산출

- 반대매매수량 = 최종부족금액/[(수량산정기준가격 × 최소담보비율(예 :1.4)) -전일종가]
- * 수량산정기준가격은 ((전일종가 × 종목군별할인율 × 0.992) - 1 주당 융자이자)로 정의

* 종목군별할인율은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군별 A/B/C 군은 전일종가의 -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중국주식은 전일종가의 -10%, 일본/홍콩/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기타국가 주식은 전일종가의 -15%로 할인하여 산정

〈투자사례〉

▶ 투자원금 400만원, 담보유자금 600만원, 10,000원인 주식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 규모 증가)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D 일 장중	10,000 원	10,000,000 원	167%	
D 일 장마감	8,500 원	8,500,000 원	142%	
D+1 일	8,300 원	8,300,000 원	138%	추가담보 납부요구
D+2 일	8,100 원	8,100,000 원	135%	추가담보미납 (30 만원 담보부족)
D+3 일	임의처분 실행			

(1) 국내주식 A/B/C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8,1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95 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195 주)이 7,000 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 (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137 만원(195 주×7,000 원)으로 담보부족금액(30 만원)의 4.6 배 수준

(2) 국내주식 D/E/F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8,100 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6,48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309 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309 주)이 7,000 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담보유지비율 (140%) 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217 만원(309 주×7,000 원)으로 담보부족금액(30 만원)의 7.2 배 수준

15. 제12 조제5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임의상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별 자동현금상환 순서

- 1) 1 차 현금상환 (05:30 경), 2 차 현금상환 (08:00 경)
- 2) 현금상환은 온라인거래 및 실시간 환전이 가능한 국가 중 주식거래 개장시간이 늦은 국가 순으로 하며, 국내를 마지막 순으로 상환한다.(단, 자동현금상환 시점에 주식거래시장이 마감된 국가에 한함)
- 3) 현금상환을 위한 원화 부족 시 외화예수금 환전은 실시간환전 가능 통화로 하며, 환전순서는 주식거래 개장시간이 빠른 국가 순으로 한다. (결제환율은 당사가 사전에 고시하는 환율 적용)

나.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
(이하 미상환융자금발생 이라 칭한다.)

- 1) 미상환 융자금 발생 당해 국가 우선 반대매매 실행 후 국내를 포함하여 온라인거래 및 실시간 환전이 가능한 국가 중 순차적으로 개장되는 국가 순서로 반대매매 처리한다.
- 2) 미상환 융자금 발생 당해 종목
- 3) 현금매수종목
 - 가) 최근일자 매수 종목
 - 나) 종목번호 빠른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단, 국내 주식의 경우 대용가격 없는 현금매수종목은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
- 4) 신용공여종목
 - 가) 대출일자 빠른순서
 - 나) 종목번호 빠른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단, 전일종가 대비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별지 14 의 나. 상환수량 기준가격) 상환차손이 예상되는 종목은 반대매매대상에서 제외

다.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납입 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이하 담보부족발생 이라 명한다)

- 1) 국가별 반대매매 순서는 국내를 최우선으로 하며, 온라인거래 및 실시간 환전이 가능한 국가 중 주식거래 개장시간이 빠른 국가 순으로 한다.
- 2)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융자일자가 빠른 종목
- 3)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종목번호 빠른 종목 (또는 알파벳 순서)

- 4)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신용융자 → 담보융자 순
- 5) 신용공여 종목 중 융자일자가 빠른 종목
- 6) 신용공여 종목 중 종목번호 빠른 종목 (또는 알파벳 순서)
- 7) 신용융자 → 담보융자 순

라.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예탁증권담보융자 / 매도증권담보융자에 게시

16. 제12조제6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임의상환 순서 변경 요구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다.

반대매매 당일 오전 08:40 까지로 한다.

17. 제16조제1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융자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거래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자, 그 밖의 회사와 거래중 부실거래자로 등록된 자, 압류계좌, 담보유지비율미달계좌, 미수증권 발생계좌 등은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나. 당사는 관계법령 및 금융당국의 조치, 담보융자 관련 회사 총한도 초과 및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실시간 담보관리에 애로가 있는 고객(휴대폰 미등록자) 및 사고발생 고객(피싱 발생계좌)는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18. 기타

해외주식 담보평가 시 적용환율은 국내주식 장중(15:30분 이전) 전일 기준환율 적용하며, 장마감 후(15:30분 이후)당일 기준환율 적용한다.